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 ③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 ④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 ⑤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3.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 ④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4.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②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5.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① 갑이 A 주택에 살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 ②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 ⑤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 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6.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그는 신문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살았다.
- ② ㉡ :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혔다.
- ③ ㉢ :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려다.
- ④ ㉣ :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
- ⑤ ㉤ :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았다.

MEMO

1문단

1)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정했다. 그런데,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법을 그리 박세지 않게 세웠다는 의미겠지?

-> 아하, 법의 개입과 자유는 반비례 관계이구나! 법이 박셀수록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 '자유주의적' 이라고 말 그대로 법이 최소화되어서 자유로운 상태이겠지. '그러나'가 온 것은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한계가 발생했을 것이다.

+a)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까?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3)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여기서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은 '불평등한 상황'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랑 같은 말이겠다.

4)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 지금껏 당연한 것은 여기서의 '복지'는 약자들을 구제할 방법이다. 게다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아직 내용이 서술되기 전이지 만 너무나 당연하게 '법의 강도를 박세게 함'이겠다.

+a)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의미를 능동적으로 읽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앞으로 후술될 정보는 이미 정해져 있다.

5)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 여기서 짜릿하게 반응된다. 법이 당연히 박세게 작용한다.

6)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a) 명심하자. 우리는 법학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다. 주거, 노동, 환경을 여기서 다 외울 수 없다. **중요하면 재진술 해주겠지!** 일단 기억하지 말자.

-> 반응해야 하는 부분은 '개인의 권리 보장 뿐 아니라' 법이 작용하는 범주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a) 어감을 느껴보자. 왜 굳이 필자는 '뿐 아니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 이는 법의 규정과 대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어떤 카테고리'가 늘어났는지 기억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7) 가령 「대기환경 보전법」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 예시를 들었다. 그렇다면 가볍게 힘을 빼고 '법이 강화되었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 여기서는 '기능을 강화함'이라는 구절이 진하게 읽힌다!

사고의 흐름·comment

(1) 어감을 느껴보는 습관을 기르자 - 왜 이렇게 적었을까?

-1번 문장에서의 '만'은 허투루 쓰인 표현이 아니다. 6번 문장의 '뿐 아니라'도 마찬가지이다. 단순 정보 제시가 아닌 **생각할 거리를 주는 표현임을 명심해야 한다. 멈추고 생각해 보자.**

(2)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 경중을 따져가며 글 읽기

-한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한 순간에 어떤 한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 것일까?

- 우리는 재진술 되는 구절을 위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중요하면 반복한다. 너무나 자명한 원리이다.

- 6번 문장에서 어떤 범주에서 법의 역할이 강해졌는지 서술된다. 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렇기에 외우려고 끄꿍대기보단, '이게 중요하면 재진술되겠지'하며 눈에 한 번 익혀두기만 하자.

(3) 예시는 추가 정보가 아니다 - 힘을 빼며 읽은 것을 확인하기

- '일반적'에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 글의 대표적인 흐름이다. 예시 이전의 정보를 진하게 잘 읽었다면,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기보다 내가 읽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재점검의 시간을 가져보자.

(4) 설명하는 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명방식 = 재진술

- 윗글에서 녹색 형광펜은 모두 다르게 적혀있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2문단

1)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 당연히, 법의 역할이 너무 강해진다? 강행적 성격이 진해져서 오히려 개인이 주권을 침범당할 수 있겠다.

2)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 아까 읽었던 대로 법과 자유는 반비례의 속성이 있겠다.

3)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 이 문장이 어떻게 와닿았는지 꼭 돌아켜보자.

-> (의문점)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야??? 법이 강해졌는데 법에 또 의존하라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잖아.

+a) 의문점은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잘 읽고 있는 독자일수록 의문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4)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㉔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㉕ 어렵다.

-> 법이 마침내 한계지점에 돌입했다.

->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한다' = '자유가 우선이다' 같은 말이다.

+a) 시류적이지만 해보자. (가) 글의 시작이 '근대 국가'는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법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을 채택했다. 이를 4번 문장에 연결하면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근대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전제하는데 법이 강해지므로 근대법의 기본원리가 지켜지지 못한다.

5)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㉖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㉗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 법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사회복지 체계를 통해 악사를 구원)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 그렇다면 아직 후술되지 않았지만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의미는

정해져있다.

-> 자유와 법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법 모델일 수밖에 없다.

사고의 흐름·comment

(5) 정해진 의미를 읽어내자

- 글을 많이 읽어볼수록 '글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감각이 따라오게 된다.

- 아직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무엇인지 서술되지 않았으나 능동적인 독자라면 모름지기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한다.

3문단

1)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
 다. = 법이 너무 개입하진 않지만 개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a) 이렇게 읽었다면 best.

-> 해결책 즉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결론으로 나아가는 분쟁 해결
 방식에만 개입한다고 한다.

2)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
 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 후술될 것을 말해주는 담화표
 지이다. 그렇기에 '점검 과정'이 앞 문장에서의 '해결 방식'과 마찬가지로
 결론이 아닌 과정을 법이 명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이 또한 재진술이다. (다른 워딩으로 적었지만)

3)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
 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 가볍게 읽힌다.

4문단

1)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다. 각각
 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 대체한 것이 아니라 공존했다. 즉 특정 경우에 따라 하나를 채
 택하여 활용했다는 것이다.

+a) 왜 이런식으로 (가) 글을 마무리 하였을까? 이건 일반적인 지문이
 아니라 (가)/(나) 복합지문이다. 즉, (가)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단진 이
 띄밥이 (나) 글에서 풀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 즉, 이제 온전 법을 따르거나(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자유를 최고
 순위로 둔다거나(자유주의적 법 모델) 이 둘을 절충한 형태(절차주의적 법
 모델을 채택하는 경우를 각각 서술해주시 않을까?

첨언을 하자면 나는 1,2,3단계를 법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하여 그림을
 그려놓았다. 이를 활용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사고의 흐름·comment

(6) (가)/(나) 글은 함부로 읽지 말자

- 분명 단독 지문이 아니다. (가)글을 마무리 하면서 (나)글에서
 어떤 내용을 (가)와 엮어서 서술할지 생각해보는 시도를 길러보
 도록 하자.
- 생각이 안날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
 는 과정으로써 유의미하니 습관을 길러보자.

5문단

1)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함' = 자유주의적 법 모델

+a) 이렇게 읽어냈는지 꼭 확인해보자. 우리는 (나) solo로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 더 나아가간다면 '계약'은 범주가 법이 아닌 자유쪽에 속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납득)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약속이니까. 법으로 규정된 대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네? = 자유

2)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 '그러나'라는 담화표지가 나왔으니, 자유롭게(계약대로) 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했겠다. 그렇다면 법을 따르는 수밖에.

-)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 법대로 하겠다 = 약자를 보호한다.

-) 약자 보호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법을 따른다는거겠다.

-) (납득) 보통은 약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은 주로 법이지. 법은 약자를 위해 설립된 것이니까.

사과의 흐름·comment

(6) (나)를 읽으며 (가) 끌고오기

- 해당 문단에서는 '계약대로 함'이 '법보다는 자유를 중요시함'으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만약 계약을 이렇게 일기 못했다면 '자유'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정보로 처리했어야하므로 머리가 꽤나 복잡해졌을 것이다.

6문단

1)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 원칙은 계약(자유)로 한다. = 자유주의적 법 모델

-)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이면 계약만으로 보호되기 어렵다 = 법대로 하겠다.

+a) 임차물이 많이 중요하면 법을 따라야한다 =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

+a)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이다 = 약자보호가 필요하다

+a) 해당 지문은 26학년도 수능특강에서의 임대차법과 연계된다. 출제자는 아마도 '6모를 치르는 학생들이 임대차에 대해서는 수능특강에서 공부하고 왔었지'를 전제하여 시험을 출제했을 것이다. 임대차에 대한 설명이 그 어느구간에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2)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이 경우는 무조건 약자를 보호해야만한다. (법을 따르니)

+a) 이 법을 토시하나 빠지고 오를 수 없다, 확보해야할 것은 이것들은 임대차에 관련된 것이고 둘다 '법'으로 끝나는 법이라는 것이다.

3)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 힘을 빼고 읽었다라면

임대차 기간을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는 것 = 집주인이 월세 사는 사람에게 방을 빼라고 함

으로 읽혔을 것이다, 즉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경우이다.

4)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집주인(임대인)이나 세입자(임차인)이 계약을 갱신(다시 정함)하자고 제안 가능하다.

5)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 전제 : 갱신 요구권 = 세입자(임차인)의 자기 보호 방식(개인 보호)

6)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안정된다.

-> (납득) 임대차 기간에 안정해져있으면 갱신 요구권이 사용될 이 유도 없겠지.

7)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납득) : 집주인(임대인)이 당장 살 집이 없어서 세입자(임차인)을 내쫓는다면 어쩔 수 없는가겠지. 갱신 요구권을 기각하는 수밖에.

사과의 흐름·comment

(7) 법 지문에서의 case 구분은 자극히 당연한 흐름을 따라가자

- 아마 지금쯤 읽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독자가 몇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해보자.

임대차의 경우는

(1) 원칙 = 계약대로(자유)

(2) 예외 = 임차물이 중요 = 법대로 -> 당연. 그만큼 너무 중요하니까.

(2)-1 갱신요구권 사용 - 세입자가 당장 갈 곳이 없음(약자 구제)

(2)-2 갱신요구권 사용 X - 집주인(임대인)이 당장 임차물이 필요

- 요약하면... 그냥 필요할 때는 법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때에는 그냥 계약대로(자유롭게) 이행한다는 것이잖아.

- 과연 이 case를 적절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출제자가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국어를 하는 것이 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적재적소에 선지에서 물어본다면 생각을 통해 '~때는 ~가 당연한거 아니야?' 라는 생각정도만 하면 된다. 그 생각의 물꼬를 지문에서 던져줄 뿐이다.

- 암기해야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약자를 지킬 때는 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계약해도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극히 옳다. 이것을 암기의 범주로 남겨서는 안된다.

7문단

1)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 자유롭게 계약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해진 의미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a) 좀 더 나아가면 계약대로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을 따른다는 것이다.

2)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세입자(임차인)이 잘못된 것이니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가 돈이 충분해서 다른 집을 구할 수 있으면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a) 결론은 소름돋을 정도로 간단하다.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법으로 보호하고, 약자가 없어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계약대로(자유롭게) 이행해도 좋다는 것이다 ㅋㅋㅋㅋㅋ 이제 끝이다.

-> 부디 이런 것을 '법 지문은 경우를 구별해나가면서 독해해야해' 같은 것으로 포장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국어를 하는 사람이니 법학자가 아니다.

3) 예컨대 ㉔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 이 문장은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설명하는 문맥속에서의 문장이다.

-> 그렇다면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㉔에서 계약(자유)가 우선되는 이유는 무조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이어야만한다.

-> 게다가 이 사고과정은 4번째 문제 정답선지와 직결됨을 확인해야 한다. 얼어결린 것이 아니다. 철저히 의도된 과정이다.

+a) 문장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3번 문장이 홀로 등장하였다면 의미파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위 문장에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를 '예컨대'라는 담화표지를 사용했기에 ㉔의 근거는 법의 보호가 필요 없기 때문이어야 글이 성립한다.

4)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

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 (납득) : 보증금이 많다는 것은, 임차인이 그 정도의 보증금을 애초에 낼 수 있다는 여력이 있었다는 것이지. 즉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네? 그렇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겠다.

+a) 만약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나의 이러한 사고과정에 돌을 던질 수도 있겠다. 개브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납득을 어떤 사고과정으로 거치든 간에 지문에 위배 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사건의 흐름·comment

(8) 문장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 ㉞의 문장이 의미파악 되어가는 과정을 잘 음미해보길 바란다. 어찌보면 단순하게 바로 뒷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입혀낸 것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뒷 문맥을 잘 따라가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법법한 사고과정이다.

(9) 납득은 지문과 모순관계가 아니라면 장땡

- 납득은 지문의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다. 즉 머릿속에 넣는 것이 목적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넣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 물론 납득은 철저히 배경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본 독자일수록 더 옳은 방향으로 납득하려고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다상다독이 국어의 핵심이다.

8문단

1)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법관이 주도한다. (법을 따른다.)

-> 이 내용 어디서 봤는데...? (가)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법은 분쟁 자체가 아니라 분쟁 해결 과정을 주관한다고 했었다!

-> 이때 자료를 가져와야한다. -> 자유니까, 각자 스스로 자료를 챙겨오는 것도 당연하다.

2)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 위 문장에서 했던 사고과정이다!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a)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 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중간 모델)은 법과 자유 모두를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해결 시에 결과 자체를 정허보단 분쟁 해결 방식에 관여한다고 한다.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있어야한다.

+a) 정말 사후적이지만, (가)의 각각 3단계가 (나의) 각각의 문단과 잘 연결되는 느낌을 받아보자. 그러면서 (가)/나 복합지문이 지는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음미해보자. 아직 6월 모의평가만 시행되었기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9월, 수능 때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scenario이기 때문에 염두해두자.

3)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이때 조정위원회가 자료 수집을 대신 해준다고? 개꿀이네. 그런데 결국 이 분쟁 조절도 개인들이 합의해야 발생한다는 것이지?

+a) 여기서 법도 준수하고 개인의 자유(계약)도 존중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을 느껴야만한다.